『3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및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대상물로 별표 5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
선임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협회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실무 (선임자) 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36조2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시행규칙 제40조)